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온라인상의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무결성정책과와 부가통신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가통신시장조사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2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며, 불법스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이 중 1명(6급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기존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의 평가기간을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26. ~ 7.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6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및 각 추천주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따른 선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제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관리·감독

제11조제5항제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 편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관리·감독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밑에 시장조사심의관을 두며, 시장조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시장조사심의관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디지털이용자기반과·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정보무결성정책과·통신분쟁조정팀·조사기획총괄과·방송시장조사과·통신시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시장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⑤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총괄·조정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보 수집·분석·활용
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시행 관련 대외협력
6.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 지원
7.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8.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조사연구

9. 국 내 업무 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전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1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심의·의결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6.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7.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추진
8.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9.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권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행실태 점검·조사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이행여부 점검 및 조사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
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 점검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
자에 대한 제재 및 위반내용의 공표
15.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제도
에 관한 사항
16.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등록·인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7.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
18. 위치정보서비스 개발·보급 및 기술표준의 보급·확산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3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
태료 부과기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이용
자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기
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조사
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 제재
22.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조사
23.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24.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2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26.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27. 방송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28. 방송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29. 노인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능력 제고 및 앱 보급
30.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이용자교육 및 참여방안 수립 및 운영
31. 민원예보 발령 등 방송통신피해 예방
3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 정책 수립·
추진
3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운영 및
관리
3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사업자 정기점검
및 관리
- ⑦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2.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지원과 인터넷 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6.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자율규제체계 지원
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제재
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제재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 확인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13.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4.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⑧ 정보무결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3의2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관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제44조의14, 15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에 따른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에 따른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제76조제3항 4의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조사연구, 자율규제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정보무결성 관련 관계기관
과의 국내외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⑨ 통신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 통신 관련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3. 통신 관련 분쟁해결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통신 관련 분쟁 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5.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6. 통신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⑩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
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4. 금지행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5.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6.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7.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8. 금지행위 관련 안전의 심의·의결 보좌

9.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전조사보고서의 검토

10.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11.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13.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관

14.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1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개정

16.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처리

17. 금지행위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
항

19. 방송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⑪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

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4.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7.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9.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10.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11.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2.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13.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4.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16. 방송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17.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9. 방송 관련 분쟁 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20. 방송 관련 분쟁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⑫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5.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
6.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7. 기간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모니터링
9.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금지와 지원금 지

급 내용·요건에 관한 사항

11.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 조치

12.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에 관한 사항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장려금·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⑬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

5.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5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시행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23명”을 “25명”으로 한다.

제6장(제2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시정원

제23조(한시정원) 전송자격인증 심사 및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7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273”을 “286”으로, 일반직 계 “267”을 “280”으로, 3급 또

는 4급 이하 “257”을 “270”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책홍보팀, 디지털소통팀, 통신분쟁조정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날부터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이 위원장을 보좌하고,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며, 통신분쟁조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분장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략)	제8조(기획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u>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및 각 추천주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따른 선임에 관한 사항</u>
6. ~ 30. (생략)	7. ~ 31. (현행 제6호부터 제30호까지와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방송정책국) ① ~ ③ (생략)	제11조(방송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지상파방송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관리·감독</u>
4. ~ 18. (생략)	5. ~ 19. (현행 제4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	⑤ -----

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 15. (생 략) ⑥ (생 략) 제12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① · ② (생 략) ③ 시장조사심의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통신분쟁조정팀 · 조사기획총괄과 · 방송시장조사과 · 통신시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⑤ (생 략) 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u>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 편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관리·감독</u> 4. ~ 16. (현행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0항부터 제13항-----. ④ ----- 이용자정책총괄과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정보무결성정책과 · 통신분쟁조정팀 · 조사기획총괄과 · 방송시장조사과 · 통신시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시장조사과를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3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⑦ (생 략) ⑧ <u>통신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 ~ 31. (현행과 같음) 3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른 <u>전송자격인증 정책 수립·추진</u> 3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른 <u>전송자격인증제 운영 및 관리</u> 3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u>전송자격인증사업자 정기점검 및 관리</u> ⑦ (현행과 같음) ⑧ <u>정보무결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6. (삭 제) 1. <u>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법령 제·개정</u>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3의2호에 따른 <u>허위조작 정보 관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u>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	--	--	---

	<u>제44조의14, 15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에 따른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정보 대응 등 정보무결성 관련 관계기관과의 국내외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에 따른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	<u>⑨ (생 략)</u> <u>⑩ (생 략)</u> <u>⑪ (생 략)</u> 1. ~ 9. (생 략)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금지, 과다 지급 제한과 지원금 지급 내용·요건 공시 제도에 운영에 관한 사항	<u>9.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u>⑨ (현행 제8항과 같음)</u> <u>⑩ (현행 제8항과 같음)</u> <u>⑪ (현행 제10항과 같음)</u> <u>⑫ (현행 제11항과 같음)</u> 1. ~ 9. (현행과 같음) 10. ----- --와 지원금 지급 내용·요건에 관한 사항
<u><신 설></u>	<u>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제76조제3항 4의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u>	<u>11.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u>	<u>11. 판매점 선입에 대한 승낙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 조치</u>
<u><신 설></u>	<u>7.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조작 정보 대응 등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조사연구, 자율규제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u>	<u>12.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u>	<u>12.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8.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조작</u>	<u>⑫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⑬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 -----</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4조(방송기반국) ①·② (생 략)	제14조(방송기반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u>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시행</u>	13. < 삭 제 >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9. <u>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시행</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25명을-----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 한시정원
<신 설>	제23조(한시정원) <u>전송자격인증 심사 및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7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둔다.</u>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2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정보무결성정책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부가통신시장조사과	2명 (4급 1명, 6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 5] <신 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3조 관련)

1. 제23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7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6급 이하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508